
**식품분야 용량킴수(슈링크플레이션)
대응방안**

2025. 12.

관계부처 합동

||| 목 차 |||

I. 검토배경	1
II. 현행 식품분야 용량표시 규율체계 및 한계점	2
III. 식품분야 용량표시 대응전략	3
IV. 세부 추진과제	4
1.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	4
2.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	6
3.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	7
4. 민·관 협의체 운영	7
IV. 향후계획	8

I. 검토배경

□ 먹거리 물가 오름세에 따른 민생문제 심각

- 지난 5년간('20.5. ~ '25.9.) 먹거리 가격은 20%넘게 상승*하였고, 특히 최근 외식물가 인상의 체감도는 상당**

* 식료품 가격 상승률 : 22.9% / 전반적 물가상승률(16.7%)보다 7.2%p 높음 (국가데이터처)

** 대표 8개 품목 금년 가격 상승률('24.12. ~ '25.11.) : 3.44% / 칼국수 1그릇 1만원 육박(소비자원)

- 가계지출 중 먹거리의 비중이 30%에 육박*한다는 점을 고려하면, 이와 같은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민생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

* '25.1분기 식료품+외식지출 비중은 29.2% (국가데이터처)

□ 은밀한 용량꼼수까지 고려하면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

- 가격 변동없이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(슈링크플레이션)는 통계에 포착되지 않으므로, 이 효과까지 고려하면 '체감물가'는 더욱 상승

- 특히, 은밀히 이루어지는 용량꼼수 특성상, 소비자로서는 인지하기 어렵고, 인지해도 마땅한 대응책이 부재*

* 설문조사 결과, 용량꼼수를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응답이 81.3% / 알면서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67.8% (마크로밀엠브레인, 2024)

□ 용량꼼수는 소비자주권 침해 요인

-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실질가격을 인상시키는 용량 꼼수는 그 자체로 기만적*이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

* 사전 고지 없이 크기, 용량 등을 줄인 제품을 보면 화가 난다는 응답이 81.6% (위 설문조사)

-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,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이 기업의 건전한 생산활동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'소비자주권' 실현이 곤란

민생애로 해소 및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 마련 필요

II. 현행 식품분야 용량표시 규율체계 및 한계점

□ 가공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규율 中 → 보완 필요

- 가공식품 중량을 5%초과 줄이면서,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현행법 상(식품표시광고법 등) 이미 규율대상
- 시장모니터링(소비자원) + 행정처분(식약처)의 체계로 집행 중이며, 중량 감소사실 미고지(범위반) 사례는 감소*하고 있는 추세
 - * 32건('24.1Q) → 9건(2Q) → 2건(3Q) → 9건(4Q) → 5건('25.1Q) → 1건(2Q) → 0건(3Q)

- 다만, 최근의 가공식품 물가상승 추이*를 고려할 때, 규율체계를 보완하여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는 방안 추진 필요

* 전반적 물가대비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음 (전년동기 기준, 국가데이터처)

	'25.5	6	7	8	9	10
가공식품	4.1%	4.6%	4.1%	4.2%	4.2%	3.5%
전반적 물가	1.9%	2.2%	2.1%	1.7%	2.1%	2.4%

□ 외식분야는 그간 규율범위 밖 → 새로이 체계 구축 필요

- 외식분야는 현재 중량 감량사실 고지의무가 없는 상황
- 중량 감량사실 고지를 의무화하려면, 그 전제조건으로서 중량 표시가 먼저 의무화되어야 하는데, 그 의무 또한 없는 실정
 - ▲신선재료를 즉석에서 조리하므로 정확한 중량 표시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, ▲업계의 영세성*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
 - * 연간 평균매출이 2억5천만원에 불과 ('23년 기준, 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-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감축 사례* 등이 불거진만큼, 전반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

* ('25.9월) 교촌치킨이 몰래 순살치킨 중량감소(700g → 500g) → (10.23) 국감 지적 후 원상복구

<참고 : 他 분야 용량표시 대응>

- 일상생활용품 39종(공정위), 생활화학제품 14종(기후부) 관련, 용량 축소사실 고지 의무 부여 중 (가공식품 분야와 유사)
- 마트 등을 대상으로 84개 품목(가공식품, 잡화 등) 단위가격 표시 의무 부여 중(산업부)

Ⅲ. 식품분야 용량표시 대응전략

- ◇ 외식분야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하고, 가공식품 분야 규율체계도 보완
 -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

① 전략 1 -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

- 가공식품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용량표시 규율체계의 외연을 외식분야로 확대
 - 다만, 규율 대상이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, 이들의 영업활동을 과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
- 공적 규율 외에, 민간 자율규제도 독려하여 효과성을 제고

② 전략 2 -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

-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용량표시의 특징을 고려할 때, 시장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감시활동이 중요
- 소비자들이 직접 사업자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압력에 의한 사업자들의 행태 개선을 유도

③ 전략 3 -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강

- 가공식품분야에서의 용량표시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가 정비

④ 전략 4 - 부처간, 민관간 협업

- 용량표시는 단일 부처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만큼, 부처 간 협업 / 민-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

IV. 세부 추진 과제

1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

가. 공적규율 - 치킨분야 중량표시제 도입 (식약처)

□ **(표시대상)** 치킨*의 조리 전 총 중량 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)

* 통닭, 순살, 콤보(다리/날개), 윙, 봉 등 치킨전문점의 주요 메뉴 해당

○ 사업자들의 자의적 중량감축에 대한 심리적 억지력*을 확보

* 매장 등에 중량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 중량 감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

○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, 최근 문제가 되었던 치킨분야에 한해 도입을 추진하되, 제도 정착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제도개선*을 검토

* 예 : 중량감축 사실 고지의무 부여, 쏠 외식분야 중량표시제 도입 등

□ **(표시방식)**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병기

○ 그램(g)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,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'호'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

<표시 예시>

현 행	표시(안)(① 또는 ② 표시)
<가격표(메뉴판)> 후라이드치킨 1마리 00,000원	<가격표(메뉴판)> 후라이드치킨 1마리 00,000원 조리전 중량 : ① ^{그램단위} 990g ② ^{호단위} 951~1,050g(10호)

○ 인터넷으로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, 같은 방식으로 웹페이지에 표시*

* 배달앱을 통한 주문 → 개별 음식점이 표시

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·주문 → 프랜차이즈 본사가 표시

□ **(적용대상)** 10대 치킨가맹본부* 및 소속 가맹점 (12,560개 점포)

* BHC, BBQ치킨, 교촌치킨, 처갓집양념치킨, 굽네치킨, 페리카나, 네네치킨, 멕시카나치킨, 지코바치킨, 호식이두마리치킨

○ 소규모 가맹본부나 개인 치킨전문점의 경우 메뉴판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

나. 공적규율 - 치킨분야 중량표시제의 내실있는 집행 (식약처, 지자체)

- **(집행방식)** 중량표시제 시행('25.12.15.) 후, 정기점검 + 수시점검 병행
 - 연간 식품분야 점검 계획*에 치킨 중량표시제를 포함하여 정기점검
 - * 매년 12월에 식약처가 익년도 식품분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등에 시달
 - 중량표시 여부, 표시중량과 실질 간의 일치 여부를 중점 점검
 - 제보,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병행
- **(집행주체)** 지방식약청 또는 사업자 관할 지자체
- **(계도기간)** 다만,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'26.6.30까지는 별도의 처분 없이, 적발 시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
 - 중량표시제 시행 사실을 시장이 인지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, 실제 메뉴판 등을 변경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
- **(계도기간 이후)** 시정명령, 영업정지(반복위반 시) 등 엄정대응

다. 자율규제 - 단위가격 인상사실 고지 (민간-관계부처 합동)

- **(자율규제 내용)** 가격을 인상하거나, 중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단위가격이 인상되는 경우,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시장에 고지*하도록 유도
 - * [소비자 고지문 예시] 다음 달 1일부터 저희 ●●치킨 모든 매장에서 □□콤보 순살 치킨 중량이 650g → 550g으로 조정되어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.
 - 외식분야에 중량표시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가격 인상사실 고지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 → 연성집행 형태로 대응 추진
- **(대상)**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추진하여, 자율적 고지문화를 시장에 확산
- **(협약)** 관계부처와 대형 프랜차이즈 간 협약을 체결('25.12.)해 자율규제 이행을 담보

2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

가. 치킨 브랜드 간 비교를 통한 시장감시 (소비자단체)

- (감시주체)** 소비자단체협의회
 - 공정위, 기재부 등 정부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위 감시활동을 지원
- (대상)** 5대 치킨 가맹본부* 대상
 - * BHC, BBQ치킨, 교촌치킨, 처갓집양념치킨, 굽네치킨
 - 향후 다른 외식상품으로도 범위를 넓혀 폭넓은 시장감시 체계 구축
- (감시방식)** 치킨을 표본구매하여, ▲중량, ▲가격(포장 및 배달가격 포함), 등을 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정보공개
 - 소비자가 비교정보를 공급하여 시장압력을 형성함으로써, 사업자들의 중량감축, 가격인상 등의 행태를 견제
 - 매 분기마다(‘26.1분기~) 감시활동을 실시해 시계열 정보도 공급

나. 소비자 제보채널 운영을 통한 상시감시 (소비자단체)

- (제보 채널)**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, SNS에 “용량꼼수 제보 센터”를 설치 및 운영 (‘25.12.)
- (제보 활용)** 소비자단체 차원의 정보제공 및 관계기관에 공유
 - 제보된 사례에 대해 추가적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시장에 정보를 제공*
 - * 예 : 특정 브랜드의 중량감축 사례가 제보되는 경우, 그 사실을 표본구매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보도자료 배포 등
 - 법 위반 혐의(중량 미표시, 허위표시 등)까지 확인되는 경우, 공정위 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 → 기관은 엄정 대응
 -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

3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

가. 현행 공적 규율체계 보완(식약처, 소비자원)

- **(현행)** 소비자원 先 모니터링 + 식약처 後 처분 체계
 - 19개 제조사, 8개 유통사*가 제공한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이 중량축소 미고지 사실 확인 후, 식약처에 통보
 - * 소비자원과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
 - 식약처는 시정명령, 영업정지(반복위반) 등 처분
- **(개선)** 감시망은 촘촘히, 제재는 강화해 용량꼼수 유인을 제거
 - 더 많은 가공식품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에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(협약사 확대, '26.~)
 - 제재 또한 품목제조 중지명령으로 강화(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, '26.下)

나. 가공식품 비교정보 제공(소비자원, 소비자단체)

- 다수 소비자들이 즐기거나,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, 중량, 가격, 원재료 등을 브랜드 간 비교한 정보를 제공('26.1.~)
 - 시장압력을 통해 용량꼼수를 억제하고, 소비자 선택을 지원

4 민-관 협의체 운영 (농식품부, 공정위, 식약처, 기재부, 중기부)

-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사업자, 가공식품 제조업자,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는 '(가칭)식품분야 민-관 협의체'를 구성 및 운영('25.12.~, 매 반기)
 - ▲용량꼼수 근절 포함 물가안정 방안 논의, ▲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 등 추진
 - ▲중량표시제 등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, ▲사업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검토 등도 병행

IV. 향후 계획

-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
 - 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, 카드뉴스, SNS, 유튜브 채널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정책 내용을 홍보
 - 특히, 치킨분야 중량표시제의 경우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'몰라서 법을 위반하는' 사례 방지
 - 원활한 의무 정착을 위해 「치킨 분야 중량 표시 가이드라인」 마련 및 지자체*, 업계 대상 교육 및 홍보
 - * 전국 지자체 지도·점검 담당 공무원 대상 치킨분야 중량표시제 교육 실시('25.12.)
 - 적용대상 점포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중량제 표시 대상인지 여부 및 구체적 표시방법에 대한 상담도 병행
- 마련된 정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

<세부과제 이행일정>

주요 과제	일정
①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	
• 치킨분야 중량표시제 도입 및 시행(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)	'25. 12.
• 중량표시제 계도기간 운영	'26. 1.~ 6.
• 중량표시제 본격 시행	'26. 7.
•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가동	'25. 12. ~
②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	
• 치킨 브랜드 간 비교정보 제공	'26. 1.~
• 소비자 제보채널 운영	'25. 12.~
③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	
• 가공식품 중량 정보 제공 회사 확대	'26. 1.~
• 제재 수준 강화(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)	'26. 下
• 가공식품 비교정보 제공	'26. 1.~
④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	'25. 12.~